

대구대학교와 (재)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(MOU)

대구대학교와 (재)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은 창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(이하 "본 양해각서"라 한다)를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 하에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 내용) 양 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보육 공간 지원을 위한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
2. 기술개발과 혁신개발을 위한 기술 자문 및 기술 R&D 등 사업화 지원
3. 신규 프로젝트 발굴과 시장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
4. 자금조달과 투자 유치에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및 투자 진행
5. 기타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및 사업 협력 시스템 구축

제3조 (협약의 이행)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해각서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며, 필요시 협약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·결정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.

제4조 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동의 없이 상호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제5조 (법적 구속력) 본 협약에서 대구대학교와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양 기관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하는 것임을 확인하며, 제4조 (비밀유지) 이외에는 양 당사자에게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.

제6조 (효력발생)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서면 협의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이 협정의 효력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 ②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 년 2 월 28 일

대구대학교

(재)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

총장 김 상 호 (인)

이사장 함 성 룡 (인)

